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271회 제1차 정례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0. 6.

복지문화 위원회
전문위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0. 6. 9.

복지문화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- 발 의 자: 박왕규 의원 외 5인
- 발의일자: 2020. 5. 20.
- 회부일자: 2020. 5. 28.
- 검토기간: 2020. 5. 29. ~ 2020. 6. 5.

2. 제정이유

관내 청소년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로진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달서구 진로 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(안 제3조)
- 다. 센터 사업, 조직 및 인력, 이용대상(안 제4조~안 제6조)
- 라. 센터 운영 및 관리, 지도·감독(안 제7조~안 제8조)
- 마. 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(안 제9조)

4. 관계 법령: 「진로교육법」 제18조

5. 검토의견

- 현행 「진로교육법<별첨>」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토록(제18조) 하는 한편, 지역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진로정보 제공,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, 진로체험 운영·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·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(제16조)할 수 있도록 규정.
- 조례안은 상기 「진로교육법」 취지에 맞추어, 관내 학생들에게 진로 상담, 진로체험 등 다양한 진로·진학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달서구 차원에서 별도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된 제정 조례안.
-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 구청장으로 하여금 관내 (학교 재학생에 한정 하지 않고) 모든 청소년 및 그 학부모를 대상(안 제6조)으로 다양한 진로·진학 교육 및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(안 제4조)하는 ‘진로진학지원센터 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’를 설치·운영토록(안 제3조)하고, 동 센터의 운영을 진로·진학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그 근거(안 제7조)를 규정하고 있음.
- 현재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교육청(이하 ‘상급기관’)에서도 위 「진로 교육법」에 따라 다양한 진로진학관련 지원책을 시행하는 점¹⁾에 비쳐 볼 때, 동 조례(안)의 제정(취지)에 대해서는 이견(異見)이 없음.
- 다만, 구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상급기관의 시행 사업과는 무관하게 관내 청소년들에게 진로체험 기회 제공 등 달서구만의 다양한 ‘진로진 학교육사업(안 제2조)’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점에 비쳐볼 때, 상급기관 시행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, 다음으로 상급기관의 예산지원 여부에 얹매이지 않고 구 자체 예산으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집행부의 향후 동 사업 추진 계획(및 재원 조달 방안) 등에 대해서도 위원회 차원의 추가 논의는 필요하다고 사료됨.

1) 「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」

「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및
「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」 등

【 관 계 법령 】

□ 진로교육법

제16조(지역진로교육센터) 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,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,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·보급, 진로체험 운영·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·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의 구성·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제18조(진로체험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·기관·단체 등(이하 "진로체험기관"이라 한다)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9조(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)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에게 무료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.
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③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

제3조(진로진학지원센터) ① 대구광역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법 제16조에 따라 학생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둔다.
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학교 및 지역사회의 진로교육을 위한 서비스 제공
2.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·보급 지원
3. 학교의 진로교육 운영에 관한 컨설팅 및 평가
4.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
5.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③ 교육감은 학생, 학부모에게 진로교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직속기관 등에 제1항의 센터와 연계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.
④ 센터와 연계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